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506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재산세 1,995,688,730원의 부과처분 및 지방교육세 399,137,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redacted]시 D 일대에서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원고는 위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수탁받은 회사이다(이하 신탁자, 수탁자 구분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남코스 18홀, 북코스 18홀) 중 남코스 18홀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8. 4. 10.부터 회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왔고, 2019. 5. 17. 기준 회원 1,111명 중 1,097명의 동의를 받자, 2019. 5. 19.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망, 신원미상, 미동의 등 회원 14명에 대해 제명하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0. [redacted]도지사에게 '36홀 회원제 골프장'을 '18홀 회원제 + 18홀 일반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5.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5. 31.부터 남코스를 대중제로 운영하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마. [redacted]도지사는 원고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5회(구두 1회 포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redacted]도지사의 위 보완 요구에 따라 2019. 6. 25.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redacted]도지사는 2019. 6. 27.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바.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수리통보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9. 9. 5. 원고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골프장 전체가 회원제 골프장임을 전제로 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995,688,730원, 지방교육세 399,137,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아. 원고는 2019. 12.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0. 2.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 18홀은 2019. 5. 31.부터 대중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 별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분리과세대상인 회원제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의의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회원'이란 골프장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은 대부분 입회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회원이 경영회사에 입회금을 예탁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시설이용권) 및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입회금 반환청구권)를 갖는 형태이다. 이에 비하여 대중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하여 이용하는 골프장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연혁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조세정책상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중과세 적용대상은 별장, 골프장 등의 사치성 재산으로서, 적용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였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는 1990. 6. 1.부터 중과세 대상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그 후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중과세 대상으로 단순히 골프장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회원제 골프장에 한하여 중과세하도록 개정하여 대중 골프장은 법률 단계에서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이후 2010. 3. 31. 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골프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기 위한 요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 18홀은 기존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날인 2019. 5. 31.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로 사용되는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회원제 골프장은 그 회원이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반하여 대중골프장은 도착순서나 예약 여부 및 그 순서에 따라 시설 이용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중 골프장 승인에 관한 공지를 2019. 7. 21.에 게시하였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2019. 8. 1.에 이르러서야 비회원들의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 이용에 관한 예약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회원들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기존의 회원들과 차별 없이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 즉 비회원들도 2019. 5. 31.부터 이 사건 골프장 중 남코스 시설을 기존 회원들과 차별없이 오로지 도착 순서나 예약 여부 및 그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을 터인데, 조세심판 과정에서부터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6. 5. 31.경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는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5호증(체육진흥기금 월별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는 부가금의 월별 징수액이 나타나 있고,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월별 징수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2019년 6월의 어느 날부터 위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금 징수액의 감소가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건 골프장의 내장객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인지도 알기 어렵다. 또한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은 이유가 2019. 5. 31.부터 비회원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의 이용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식으로 비회원의 이용을 허용하기 전(예약시스템을 변경하였다는 2019. 8. 1.)까지 잠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적으로 기존 회원에 대하여 대중골프장 이용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의 이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인지도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부터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원고는 2019. 5. 20.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redacted]도지사가 5회(구두 1회 포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으며, 원고가 위 보완 요구에 따라 2019. 6. 25. 다시 신청을 하자, [redacted]도지사는 2019. 6. 27. 위 신청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을지훈련 등의 이유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청에서 승인까지 1개월 가량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redacted]도지사의 보완요구가 부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면적은 북코스 54.76%, 남코스 45.25%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전체 회원들로부터 1,868구좌 153,779,000,000원을 입회금으로 받았음에도 변경승인 신청 당시 771구좌 61,211,250,000원(전체 입회금 중 약 39.8% ≒ 61,211,250,000원 ÷153,779,000,000원)만을 반환하여 입회금이 적정하게 반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redacted]도지사가 원고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는 보완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2018. 5. 31. 선고 2018두35889 판결의 사실관계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골프회원권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으며,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골프장 시설이용약관의 개정이 이루어져 실제 대중골프장으로의 운영이 증명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별지

관계 법령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 12. 3.>

나. 삭제 <2019. 12. 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